



[2013.3.23.] [24454 , 2013.3.23.,]

() 043 - 719 - 1854

1 () 「 」 .
2 () 「 」 (" ") 2 4 " " . < 2010.3.15.,

2012.6.7., 2013.3.23. >

1. 가. 「 」 .
 . 「 」
 . 「 」 (85)
 . 「 」 (39)
 . 「 」
 . 「 」
2. 「 」
3. 「 」
4. 「 」
5. 1 ,
6. 1 ,

3 () 7 1 . (" ")

- 1.
2. 가
- 3.
- 4.
5. ,

4 () 1 4 15 . 가
(互選) , 가

.< 2013.3.23.>

1. 「 」
- 2.
3. 「 」 (「 」)

가. 「 」 2

4.

2 1 3 1 가 ,

1. 2 1 2 1

2. 2 3

2

5 ()

6 ()

1. 가

2. 3 1 가

3.

2

3

7 ()

8 2

1. 「 」 2

2. 3

가 1

8 2

2

8 ()

9 1 " "

(mouse), (rat),

(hamster),

(gerbil),

(guinea pig),

9 ()

12 1 " "

8

10 (가) 23 4

(" ") 가

가

. <

[2013.3.23.>](#)

1. 가 (, , ,) 1

2. 1

3. 1

4.

1

5.

1

11 () 23 5

1.

- 2.
- 3.
- 4.
- 5. 가
- 6.
- 7.
- 8.
- 9.
- 10.
- 11.
- 12.

23 5

- 1.
- 2.
- 3.
- 4.
- 5.

11 2() 가
 「 」 23 , 18 2
 19 1 가 . <

[2013.3.23.>](#)

- 1. 8
- 2. 12
- 3. 24
- 4. 26
- 5. 28

[[2012.1.6.](#)]

12 () 28 1 1 .

13 () 33 1 2 .

[[2011.4.22.](#)]

< 24454 ,2013.3.23.>

1 () . < >

2 3

4 () <18>

<19>

2 5 " " " .
 4 2 3 , 10 11 2 " "

2 1 1) 5)
"
<20> <39>

" " "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나목의 운영정지기간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시설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정한다.
- 마.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은 해당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연간 총매출액	1일당 과징금 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23,000원
11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	150,000원
13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178,000원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05,000원
20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	270,000원
250억원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연간 총매출액	1일당 과징금 금액
5억원 미만	6,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3,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41,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8,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95,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123,000원
9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	150,000원
110억원 이상	178,000원

[별표 2]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100	100	100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30	50	100
다.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채차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	30	50	100

라. 법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	30	50	100
--	--------------	----	----	-----